

# 엘리트 선수 자격제 및 랭킹전 시행 알림

풋(Foot) 오리엔티어링 경기규정 개정에 따라 엘리트 선수 자격제 및 랭킹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선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엘리트 선수 랭킹전

### ○ 랭킹시스템

- 한 해 동안 공인대회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 엘리트 선수의 순위를 매기는 제도
- 공인대회에서의 성인 엘리트 클래스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

### ○ 적용범위: 남·여 21세 클래스(M21E, W21E, M21, W21)

### ○ 선수등록: 규정 제42조 참고(2021년부터 시행)

### ○ 랭킹포인트 및 순위: 규정 제43조 참고

### ○ 랭킹전 시행

- 2020년 6월 1일 이후 개최되는 모든 공인대회 결과를 반영
- 12월말까지 2020년 클래스별 순위 공지에정

## □ 엘리트 선수 자격제

### ○ 엘리트 선수자격

- 클래스별 연간 랭킹 순위에 따라 차기년도 엘리트 선수자격을 부여
- M21E 클래스는 상위 15위, W21E 클래스는 상위 10위까지 자격부여
- M21 및 W21 클래스는 상위 5위까지 자격부여

### ○ 명단 공지

- 매년 12월말까지 공지에정

### ○ 공인대회 출전 자격제한(2021년부터 시행)

- 공인대회의 M21E, W21E 클래스는 엘리트 선수자격이 있는 선수만 참가 가능(외국인은 예외)

- 공인대회 주최자는 M21E, W21E 클래스 출전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, 자격이 없는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그 기록은 무효로 함.

※ 랭킹전은 2020년부터 실시하며,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도 엘리트선수 자격제한이 적용됨. 자격부여 방법은 규정 제44조 ①항을 그대로 적용함.

※ 내용문의: 소병조 경기위원장(010-5459-0939)

첨부: 관련사항 경기규정(2020. 5. 23 개정).



사단 법인 **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**  
KOREA ORIENTEERING FEDERATION

# 풋(Foot) 오리엔티어링 경기규정 제40~44조

## 제 8 장 랭킹 시스템

**제40조(정의)** ① 랭킹시스템은 한 해 동안 공인대회에서의 성적을 바탕으로 국내 엘리트 오리엔티어의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이다.

② 랭킹시스템은 공인대회에서의 성인 엘리트 클래스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.

**제41조(적용범위)** ① 남·여 21세 클래스(M21E 및 W21E, M21 및 W21)에 적용한다.

②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선수로 한정한다.

**제42조(선수등록)** ① 랭킹 시스템에 포함되는 클래스의 선수는 연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선수등록을 해야 한다.

② M21E, W21E 클래스의 경우, 연간 선수등록비 3만원을 연맹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선수등록이 완료된다.

③ 선수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랭킹 포인트를 반영한다.

**제43조(랭킹 포인트)** ① 각 공인대회의 국내선수 1위 기록(초)을 해당 선수의 기록(초)으로 나눈 다음 1,000을 곱하여 개별 포인트를 산출한다.

② 연간 획득한 개별 포인트를 합산하여 개인별 랭킹 포인트를 산출한다. 이때 연간 공인대회 개최 횟수에서 1경기는 제외하고 반영한다.(예; 연간 8경기가 유효한 기록으로 개최되었을 경우 상위 7개의 개별 포인트만 반영)

③ 개인별 랭킹 포인트가 많은 순으로 성별, 클래스별 순위를 정한다.

**제44조(엘리트 선수자격)** ① 클래스별 연간 랭킹 순위에 따라, M21E 클래스는 상위 15위까지, W21E 클래스는 상위 10위까지, M21 및 W21 클래스는 상위 5위까지의 선수에게 차기년도 엘리트 선수 자격을 부여한다.

② 연맹은 연간 랭킹 순위 및 차기년도 엘리트 선수자격을 매년 12월말까지 공지해야 한다.

③ 공인대회 M21E, W21E 클래스는 엘리트 선수자격이 있는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. 다만, 외국인 선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④ 공인대회 주최자는 M21E, W21E 클래스 출전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, 자격이 없는 선수가 출전했을 경우 그 기록은 무효로 한다.

## 제 9 장 부 칙

### 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, 제44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